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16.12.21.(수) 15:00 - 18:00	장 소	자원봉사센터(구청 7층)
참석자	11명(김경옥, 김지희, 박다혜, 손민호, 윤성봉, 윤정섭, 이강훈, 이경선, 이민영, 이진수, 하장호)		
회 의 내 용			
<p>○ 회의시작</p> <p>○ ○○○ : 오늘 워크숍이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알아가자는 취지였는데, 여러가지 과제와 발전방향을 얘기해보는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워크숍에 따른 자세한 논의는 추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논의해보기로 하겠다.</p> <p>○ ○○○ :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p> <p>○ ○○○ : 심의할 안건을 일괄로 처리하도록 하겠다. 인권영향평가는 총 7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인권센터에 검토의견을 준 것이 있다. 패션성유봉제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인권영향평가와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고 도서관설치,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도 해당사항 없는 것 같고,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도 크게 인권침해적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패션성유봉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 해촉에 있어서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장애인차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에 관해서는 센터에서 의견제시한 부분은 성비구성에 관한 규정 중에서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과,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역사, 마을, 인권, 주민자치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서 소수자 그룹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위촉했듯이, 해촉의 주체도 구청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자의적으로 해촉될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p> <p>○ ○○○ :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해서는 같이 논의해보고 싶은 것은 23조 5항에 관한 내용이다. 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된 후에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p>			

회 의 내 용
<p>을 개정하는 안인데 23조5항 공무원이 사법기관으로부터 내사 또는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부서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석의 여지도 많고 내사에 관한 것은 본인이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되는 내용을 공표하는 것이 사생활보호의 문제도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정인 것 같다.</p> <p>○ ○○○ : 1~6번안까지 다른 의견이 있나</p> <p>○ ○○○ : 다른의견 없음</p> <p>○ ○○○ :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심의하겠다.</p> <p>○ ○○○ : 5항에 관해서는 이 규칙위반에 관련된 사항만을 염두에 두는 것인가.</p> <p>○ ○○○ : 이 규칙은 표준안이 있는 것인가</p> <p>○ ○○○ : 행동강령 전부 개정했는데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인데 23조5항은 그 전부터 계속 규정된 내용인 것 같다.</p> <p>○ ○○○ : 다른 구도 다 똑같이 규정되는 것인가.</p> <p>○ ○○○ :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p> <p>○ ○○○ : 지금 바로 권고를 주지 않더라도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의견을 추후에 주셔도 될 것 같다.</p> <p>○ ○○○ : 다른 구나 서울시에도 김영란법 이후에 동일한 개정이 있었는지 봐야 할 것 같다.</p> <p>○ ○○○ :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이란 내용도 비슷한 것 같다.</p> <p>○ ○○○ : 보고요건이 내사 또는 구금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좀 이상한 것 같다.</p> <p>○ ○○○ : 구금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내사를 잘 모를 수도 있다.</p> <p>○ ○○○ : 내사라는 표현을 왜 써야하는 지 모르겠다.</p> <p>○ ○○○ : 피내사자는 본인이 내사받고 있는 지 모를 수 있는데 보통은 모르는데 알 수도 있는 것 같다.</p> <p>○ ○○○ :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왜 규칙에 규정되어야 하는 지</p> <p>○ ○○○ : 이 건에 대해서는 당장 권고하지는 말고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p> <p>○ ○○○ : 확인해보고 워딩해서 메일로 다시 의견을 묻도록 하겠다.</p> <p>○ ○○○ :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인권센터의 의견으로 하기로 하고 다른사항</p>

회 의 내 용

은 의결하도록 하겠다.

○ 회의종료

※ 회의내용 중 주요논의 및 의견사항에 대해 요약 작성하였음.